

소비자의 재미VS안전

편슈머 제품 알아보기!

편슈머(funsumer)란?

소비자(consumer)와 재미(fun)를 결합한 말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재미, 즐거움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를 뜻합니다.



Fun(재미)



Consumer(소비자)

대표적인 편슈머 제품들 이외에도 다양한 편슈머 제품이 존재합니다!



딱풀모양 캔디



마요네즈 헤어팩



구두약용기 초콜릿



딸기잼모양 팩



도넛모양 입욕제



빵모양 비누

편슈머 제품의 긍정적 효과

1. 이종 산업 간 교류 활성화
화장품x라면 / 책x과자 등 새롭고 신선한 결합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
2. 식품 모양에 다양성 및 재미 추구
식품 모양을 직관적으로 바꾸어(파인애플 맛의 단무지 젤리 등)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
3.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브랜드 이미지 상승
소비자들에게 투표를 통해 선택권을 주거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상품 생산



편슈머 제품의 문제점

먹으면 안되는 비식품과 먹어도 되는 식품의 비슷한 외관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지능력이 성인들에 비해 떨어져 구분이 어려운 어린 아이들이나 나이가 들어 시각이 떨어져 구분에 어려움에 느끼는 노인들은 편슈머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편슈머 제품 규제



[법제처]

식품 등의 표기,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9.18)시행

편슈머 식품 중에서는 생활화학제품과 포장이 유사한 식품이 유통 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 계층이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